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등〉
■ 용혜인의원 · 안호영의원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98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검토	4
가. 제정안의 개관	4
나.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6
2. 조문별 검토	11
가. 제1장 총칙	11
나. 제2장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및 연합회	21
다. 제3장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원	29
라. 제4장 보칙 및 부칙	37
※ 참고자료	40
참고.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개요	4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 · 안호영 · 서왕진의원 등 3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있어,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경관 훼손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 자체가 지체되는 상황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 따른 공공자원인 자연력에 해당하는 만큼, 그 개발 이익은 특정 자본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함. 실제로 독일·덴마크·영국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

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의 제한,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지역사회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해당 사업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 등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

- 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전환 확대 목표, 재원 조달 방안, 조합 지원·육성 방안,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조합은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소규모전력중개,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민주성·공공성·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 대한 우선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4장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및 연합회	제6조	조합의 사업
	제7조	조합의 의무
	제8조	조합의 회계
	제9조	연합회
	제10조	연합회의 사업

장	조	조 제목
제3장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원	제11조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제12조	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제13조	금융의 지원
	제14조	이격거리
	제15조	계통연계와 우선구매 지원
	제16조	조세의 감면
제4장 보 칙	제17조	경영공시에 관한 특례
	제18조	감독
부 칙		시행일

제1장에서는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장에서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사업·의무·회계 및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공공부지 등의 확보와 제공, 금융의 지원, 이격거리, 계통 연계와 우선구매 지원 및 조세의 감면 등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장에서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에 관한 특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함.

나.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자연 자원을 활용한다는 특성상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경관훼손,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공공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충분하게 환원되지 못한다는 인식 역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21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¹⁾ 일정 요건을 만족한 주민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추가 수익을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확대되어옴.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기준: 2025년 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태양광	1개소	6개소	32개소	100개소	44개소	46개소	22개소	16개소	267개소
	(2MW)	(7MW)	(144MW)	(461MW)	(347MW)	(366MW)	(255MW)	(133MW)	(1,715MW)
풍력	-	-	1개소	1개소	-	5개소	4개소	4개소	15개소
	-	-	(43MW)	(28MW)	-	(129MW)	(153MW)	(241MW)	(594MW)
계	1개소	6개소	33개소	101개소	44개소	51개소	26개소	20개소	282개소
	(2MW)	(7MW)	(187MW)	(489MW)	(347MW)	(495MW)	(408MW)	(374MW)	(2,309MW)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현행법은 주민이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해외에서는 주민이 단순한 발전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시민에너지(Citizen Energy) 모델²⁾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2) 시민에너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익을 나누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운동 및 협동조합 활동을 의미함.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덴마크 등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하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얻은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동체로 환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금융지원이나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이격거리의 특례, 전문인력 양성, 계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현행 제도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해외 주요국 역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생에너지법이나 협동조합법 등 기존의 법 체계를 통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³⁾

한편, 정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고 발전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사업의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 주체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기본적인 정책 방향 및 사업 추진 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마을소득 사업의 협동조합과 “구체적인 대상 및 사업 범위”에는 차이가 있고, 제정안에 따른 지원책의 대부분이 현재 시행 중⁴⁾이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에서⁵⁾ 새로운 지원 수단의 도입 없이 별도의 의무만 부과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촉진법”,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내에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중간지원조직 운영, 공공부지 임대료 감면, 금융지원, 이격거리 미적용 등

5) 전력계통 우선접속, 우선이용,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제정안과 햇빛소득마을 사업 비교]

구분	제정안	햇빛소득마을 사업
에너지원	재생에너지(태양광 포함)	태양광
협동조합 요건	• 농촌과 산촌, 어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3분의 2이상 출자 협동조합 •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 이상 출자, 해당지역 3분의 2이상 거주하는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로 소속 구성원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명 이상 출자한 협동조합	• 마을 주민 10명 이상 (마을 총회 승인 및 주민 70% 이상 동의)
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등
지원	• 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 금융지원 • 이격거리 예외 적용 • 계통연계 지원(우선접속)	• 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 금융지원 • 이격거리 예외 적용 • 계통연계 지원(우선접속)
의무	• 경영공시 의무 • 당기순이익 10% 이상 공유	• 경영공시 의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생에너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이익공유”,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협동조합 기

제 정 안

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산림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서 거주하는 해당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 나.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협동조합
- 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소속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3.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이란 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익공유”란 조합이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관련 공익 사업을 위탁 받아 대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조정을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및 공유를 통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다음으로,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정의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목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주민의 출자 인원, 출자비율, 거주지역, 조합원 수 등 세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합의 유형별 출자 요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6) 예를 들어, 나목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100명 이상’ 출자하면 되므로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반면, 가목의 경우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안 제2조제2호가목은 농촌·산촌·어촌에 거주하는 해당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는 “마을”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의 “조합”의 범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햇빛소득마을”⁷⁾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제정안과 햇빛소득마을 사업 비교]

구분	제정안	햇빛소득마을 사업
에너지원	재생에너지(태양광 포함)	태양광
협동조합 요건	· 농촌과 산촌, 어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3분의 2이상 출자 협동조합 ·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 이상 출자, 해당지역 3분의 2이상 거주하는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로 소속 구성원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명 이상 출자한 협동조합	· 마을 주민 10명 이상 (마을 총회 승인 및 주민 70% 이상 동의)

7) 정부는 행정리 단위(1개 마을에 1개 조합만 허용), 협동조합 10인 이상 출자 등을 기준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고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제5조)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의 조성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정안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타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의 조성 등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확대를 위해 행정, 재정,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이용 제고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주민 상호간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
2.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조합의 지원·육성 방안
4. 조합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
5. 조합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6.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7. 그 밖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제 정 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먼저,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하나의 항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안 제3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 제52조제1항이 인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및 연합회”와 동일 개념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3조제2항 중 “세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고,⁸⁾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⁹⁾에서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제정안도 동일하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4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8) 재정경제부는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¹⁰⁾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 기존 법정계획과의 중복되거나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한 기본계획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에 이미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¹¹⁾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내용은 기존계획에 포함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¹¹⁾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제정안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관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되,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¹²⁾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11) 참고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5.)**에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목표, 모델, 지원체계, 인센티브 등이 반영되어 있음.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2장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및 연합회

1) 조합의 사업·의무·회계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6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범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기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원 및 지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등으로 규정함.

안 제7조는 조합이 준수할 의무로 민주성·공공성·공개성의 원칙에 따른 운영 의무,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의무,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주민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는 조합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교육 등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조합사업의 이용으로 보며,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위해 조합의 조합활동 참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 사업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3.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4.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주성·공공성·공개성의 원칙에 따른 운영 의무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의무 3.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주민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의무 4. 조합 간의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의무 제8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복리증진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교육 등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사업의 이용으로 보며, 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위해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먼저, **안 제6조**는 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설비의 유지관리나 교육 등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6조제1호**는 조합의 사업범위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생산 사업”이라는 용어는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열생산사업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발전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¹³⁾

또한, **안 제6조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조합의 사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조합의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7조**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을 받는 조합에 요구되는 공익적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7조**는 각 호에 조합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 제7조**의 취지가 조합의 책무와 같은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다음으로, **안 제8조**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조합이 창출한 수익이 조합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본 출자 뿐만 아니라 조합의 운영과 교육 등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당의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회계제도로서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익배분의 최소 비율인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조합이 사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이익배분의 최소 비율은 시행령을 통하여 조합이 사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편, **안 제8조제2항**은 조합원이 교육 등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으로 간주하여 배당 기준을 확장하고자 하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와 평가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위 법령 등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연합회 및 연합회의 사업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9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유형을 관할 업무구역의 범위에 따라 전국연합회, 광역연합회, 시·군·구연합회로 분류하여 규정함.

안 제10조는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사업 및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보수 사업 등을 규정하며, 회원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일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9조(연합회) 연합회는 관할 업무구역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국연합회: 전국 과반 이상의 시·도에 법인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2. 광역연합회: 해당 시·도에 법인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3. 시·군·구연합회: 해당 시·군·구에 법인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제10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 2.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사업 및 발전사업 3. 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보수 사업 4. 재생에너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 정 안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및 다른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7. 회원 협동조합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8.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9. 회원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10.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용역 사업
 11. 전기공사업
 12. 전력거래 중개사업
 13.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시·군·구연합회 및 광역연합회는 회원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 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총회, 이사회에 권한을 제외한 일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개별 조합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과 정책지원 기능 등을 연합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간 협력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다만, 안 제9조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그 규모에 따라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관할구역에 따른 연합회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유형 구별의 실

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관할구역에 따라 연합회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협동조합 연합회가 국가 또는 시·도 명칭 사용을 인가받는 경우 기존 법령으로도 전국·광역 구별이 가능하므로,¹⁴⁾ 별도 법률로 유형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안 제10조제1항**은 연합회가 원자재 공동구매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유지보수사업, 정책개발, 연구·교육, 정부 위탁사업, 전력거래 중개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조합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연합회의 사업범위가 조합의 사업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합회의 역할이 회원 조합을 지원하는 조직인지, 독립적인 사업주체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1항제12호**는 “전력거

14)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래 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는 전력거래 중개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는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¹⁵⁾ **안 제10조제1항제14호**는 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이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대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원 조합의 자주성 등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을 통해 대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⁶⁾

15) 「전기사업법」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6) 기획예산처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대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 가능 규정이 없고, 회원 조합의 자주성 등 설립목적에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 대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제3장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원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합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는 제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15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에 우선하여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합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유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수익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임대료의 감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조합에 임대하여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인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금융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조합이 발전 설비를 설치

제 정 안

하는 경우에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격거리)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통연계와 우선구매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하여 접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먼저, **안 제11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조직화, 인·허가 지원, 전문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11조**는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문조직의 기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시 부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부지를 조합에 우선 제공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규정하며, 공공부지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온실가스 감면 실적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¹⁷⁾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2조제4항은 공공부지를 조합에 임대하여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등을 조합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조달이나 설비 투자 등은 민간인 조합이 부담함에도 공공부지 임대만으로 설비 전체에 대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공공부문 자체의 감축 노력을 해이하게 만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합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필요성은 공감하나, 안 제12조제2항의 임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고, 안 제12조제4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2항¹⁸⁾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행 실적을 관리하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운영 방안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13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중요하므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자 등 금융 지원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제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하여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지 규제에 의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정안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19)의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 포함될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5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지연을 완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기사업법」²⁰⁾상 전력계통의 접속 및 운영은 계통의 안정성과 접속가능 용량 등을 고려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계통접속 및 전력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차별 없이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망중립성과 형평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운영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²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5조제1항의 계통접속은 「전기사업법」**

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20) 「전기사업법」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참고로,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춘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26.8.20.)됨.

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예외사항에 대한 허용 여부도 「전기사업법」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안 제15조제2항의 경우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이용하게 한다”는 개념이 불명확하며, 우선 구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특정 발전원의 우선 구매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 부담과 사업 운영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안 제16조는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 대상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와 상충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제4장 보칙(안 제17조 및 제18조) 및 부칙

안 제17조는 조합 및 연합회는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납입총액과 관계 없이 경영공시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조합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업무의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7조(경영공시에 관한 특례) 조합 및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납입총액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9조의2 및 제82조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에 따른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17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²²⁾상 경영공시 의무를 조합원 수 또는 출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 협동조합보다 강화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경영공시의 대상은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조합에 일률적으로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히 소규모 조합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조합이 법률상 의무나 회계원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청에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22)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사업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다만, 안 제18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감독 권한의 행사 주체 및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법 체계상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관리감독 권한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권한·책임 일치의 원칙이며, 제정안과 같이 다수의 기관에게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일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중 감독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²³⁾

마지막으로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에 따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하위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23)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감독, 시정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되어 있음.

1. 사업목적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주요 요건

- (지원 규모) 500개 이상 ('26년 총700개소→'30년 3,000개소)
- (참여 대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신청,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도 협력
 - (마을의 범위)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의 범위) 공고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협동조합)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주민의 자격을 갖춘 자 10인 이상 참여
 - (주민동의)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70% 이상 주민동의 필요
- (설비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 다만 1MW 초과시 他요건 충족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재원 확보)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가 필요, 조합원 출자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마을기금, 지방소멸기금 등을 보조재원으로 활용
 - 수익은 정관,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에 활용
- (ReSCO* 활용) 발전소 건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을 가진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 *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 (국산화 원칙)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 (수입 안정성 지원)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등을 통해 전력판매 지원

3. 정부 지원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최대 85% 금융지원, ESS 설치비, 주민 교육·컨설팅 및 부지 발굴 및 계통 연계여부 상시 확인,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등

4. 신청서 접수, 선정결과 발표 일정 (공모일 : 3.31)

- 1단계 마을은 5월 말까지 1차 접수 → 7월 중 선정결과 발표,
- 2단계 마을은 7월 말까지 2차 접수 → 9월 중 선정결과 발표